

#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

제정 2014.04.01

7차 개정 2026.02.2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** 삭제 <2022.10.4.>

**제3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2. 창업 강좌 운영 <개정 2026.2.23.>
3. 창업동아리 발굴 및 운영 사업
4.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운영
5. 예비창업인력 지원 및 창업교육 인식확산 사업
6. 창업교육 강화에 필요한 지원업무 <개정 2018.6.1.>
7. 신설 <2018.6.1.> 삭제 <2026.2.23.>

**제4조(적용범위)** 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5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6.2.23.>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3.>

1. 삭제 <2026.2.23.>
2. 삭제 <2026.2.23.>
3. 삭제 <2026.2.23.>
4. 삭제 <2026.2.23.>
5. 삭제 <2026.2.23.>
6. 삭제 <2026.2.23.>
7. 삭제 <2026.2.23.>
8. 삭제 <2026.2.23.>
9. 삭제 <2026.2.23.>

**제6조(임원 및 직무)** ① 삭제 <2026.2.23.>

② <개정 2022.10.4.> 삭제 <2026.2.23.>

③ 삭제 <2026.2.23.>

④ <개정 2018.6.1.> 삭제 <2026.2.23.>

**제7조(운영인력)** ① 삭제 <2026.2.23.>

② 삭제 <2026.2.23.>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

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분석·환류·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2.1.>
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3. 창업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
4. 삭제 <2026.2.23.>

5. 기타 창업교육 관련사업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의2(평가및활용)** 창업지원사업의 운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창업지원운영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한다. <신설 2019.2.1.>

**제9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
**제10조(회계)** ① 센터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본 대학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.

② 재정지원 기관이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을 제시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.

**제11조(시행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